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모범운전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근거 신설〉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599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모범운전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근거 신설 (안 별표 제220호)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임호선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7. 21.

다. 회 부 일 : 2025. 7.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모범운전자’의 정의와 모범운전자연합회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모범운전자 인정 대상이 사업용운전자로 제한적이고 업무 수행환경이 열악한 실정임.

모범운전자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교통경찰의 업무 보조 등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 운전자가 가입하는데 한계가 있어 새로 충원되거나 자원하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현재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은 복장 및 장비, 보험, 보조금 등이 있지만, 모범운전자회 활동과 업무 수행 중 쉴 수 있는 장소가 없어 장비 보관과 휴식에 애로한 점이 있음.

이에 일반운전자도 무사고 운전 경력이 10년이상이면 모범운전자의 인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모범운전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검토의견

1. 모범운전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근거 신설 (안 별표 제220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모범운전자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 특례 근거 신설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¹⁾는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한 [별표]의 개정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개별법상의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야 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 및 제6조²⁾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요건으로 ① 특례목적의 공익에 부합 여부, ② 예산지원 등 다른 수단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

2. 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나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특례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서 적절할 것

3.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및 적용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것

4. 국유재산특례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운용될 것

제6조(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유재산특례 신설 등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에 비해 효과적인지 여부, ③ 특례요건의 명확성과 구체성, ④ 존속기간의 적절성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무분별한 특례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준에 따라 신설 국유재산특례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유재산법」 및 시행령은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원칙적으로 해당 재산가액의 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하 생략)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①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감면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6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개정안은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_2211600호)에 따라 모범운전자에게 국유재산 사용료등 감면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참고로, ‘모범운전자’란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

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³⁾함.

개정안에 대하여 현행법 제5조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특례인정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개정안은 국유재산특례를 통하여 모범운전자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모범운전자가 경찰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⁴⁾ 교통상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경찰 인력의 효율적 활용 및 교통 문화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유재산특례 신설의 공익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임.

둘째, 현행 「도로교통법」은 국가로 하여금 모범운전자에게 교통정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범운전자연합회⁵⁾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3)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3.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 중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5) 모범운전자연합회 :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찰청 허가 사단법인으로 약 25,000명 활동 중

하고 있는 바⁶⁾, 모범운전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가 중복지원에 해당하여 효과성이 저해될 우려는 없는지 여부와 금전 지원에 비하여 국유재산특례가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국유재산특례의 요건이 ‘모범운전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고 법률에서 모범운전자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명확성과 구체성이라는 특례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될 필요가 있음.

넷째, 개정안은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특례의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개정 시 존속기한 설정 원칙⁷⁾을 감안하여 존속기한의 적절성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됨⁸⁾.

참고로,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_2211600호)에 대한 심사결과를 전제로 하므로, 해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음.

6) 「도로교통법」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7) 사용료 감면: 5년 / 양여·장기사용 허가: 8년

8)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교통안전 봉사활동 수행을 이유로 국유재산 무상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유사한 자원봉사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보충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 신설 >	연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220	「도로교통법」 제5조의3	사용료등의 감면	2035. 12. 31.

문의처

02)6788-5150